

제248회 임시회
2006. 3. 31(금)

심 사 보 고 서

○ 충청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교육사회위원회

충청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 2006년 2월 20일(충청북도교육감)

나. 회부일자 : 2006년 2월 21일

다. 상정일자 : 2006년 3월 22일(제1차 교육사회위원회)

2. 제안설명 요지(교육국장 박의상)

가. 제안이유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의거 보조기관으로 두도록 되어 있는 부교육감 설치규정을 명문화 하고, 2006. 1. 12. 공포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라 충청북도괴산교육청의 명칭을 충청북도괴산중평교육청으로 변경하려고 하는 것임.

나. 주요내용

- 부교육감의 직급을 교육규칙으로 정함(안 제2조)
- 교육감 밑에 두는 부교육감과 부교육감의 권한을 정하는 규정을 신설함(안 제5조)
- 별표2 및 별표4의 관할교육청란중 “충청북도괴산교육청”을 “충청북도괴산중평교육청”으로 함(안 별표2, 별표4)

3.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김재준)

- 본 개정 조례안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의거 부교육감의 직급규정과
그 권한 및 직무에 관한 사항을 명문화함으로서 조직의
안정적 및 체계적 운영에 기여 할 수 있다고 판단됨
- 다만 부칙의 시행일을 규정함에 있어 조례안 제2조의 개정
조항과 제5조의 신설조항의 시행일을 2006년 3월 1일로
정해야 할 사유에 대해서는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수정가결

가. 수정이유

- 본 개정 조례안의 부칙 규정의 경우 조례안 제30조제3항의 별표2
및 제32조제3항의 별표4의 개정은 지방교육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06. 1. 12 공포)에서 규정한 시행일(2006년 3월 1일)부터 적용
하고
- 보조기관인 교육감의 직급 및 권한을 명시한 조례안 제2조 및
제5조의 경우는 그 시행일을 공포한 날부터 규정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조례안 부칙 수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0조제3항의 별표2 및 제32조제3항의 별표4의 개정규정은 2006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7. 소수의견 요지 :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9. 첨부서류

- 충청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 충청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안년월일 : 2006년 3월 22일
제안자 : 조계숙 의원의 5

□ 제안이유

- 본 개정 조례안의 부칙 규정의 경우 조례안 제30조제3항의 별표2 및 제32조제3항의 별표4의 개정은 지방교육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6. 1. 12 공포)에서 규정한 시행일(2006년 3월 1일)부터 적용하고
- 보조기관인 교육감의 직급 및 권한을 명시한 조례안 제2조 및 제5조의 경우는 그 시행일을 공포한 날부터 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개정조례안 부칙을 다음과 같이 수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0조제3항의 별표2 및 제32조제3항의 별표4의 개정규정은 2006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충청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충청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칙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0조제3항의 별표2 및 제32조제3항의 별표4의 개정규정은 2006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수정안대비표

현행	개정안	수정안																														
<p>제2조(국장·담당관·과장 등 보조·보좌기관의 직급 등) 본청과 지역교육청에 두는 국장·담당관 및 과장의 직급과, 직속기관과 지역교육청 소속기관의 장 및 보조기관의 직급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p> <p><신설></p> <p>제5조 (국의설치) 충청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교육국 및 기획관리국을 둔다.</p> <p>[별표 2] 도서관의 명칭과 위치</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 style="width: 33%;">관할교육청</td> <td style="width: 33%;">도서관명</td> <td style="width: 33%;">위 치</td> </tr> <tr> <td>충청북도과산 교육청</td> <td>괴산도서관</td> <td><생략></td> </tr> <tr> <td>충청북도과산 교육청</td> <td>증평도서관</td> <td><생략></td> </tr> </table> <p>[별표 4] 학생아영장의 명칭과 위치</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 style="width: 33%;">관할교육청</td> <td style="width: 33%;">아영장명</td> <td style="width: 33%;">위 치</td> </tr> <tr> <td>충청북도과산 교육청</td> <td>청천학생 아영장</td> <td><생략></td> </tr> </table>	관할교육청	도서관명	위 치	충청북도과산 교육청	괴산도서관	<생략>	충청북도과산 교육청	증평도서관	<생략>	관할교육청	아영장명	위 치	충청북도과산 교육청	청천학생 아영장	<생략>	<p>제2조(보조·보좌기관등 직급) 다음 각호의 직급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본청의 부교육감 국장 담당관 과장 2. 지역교육청의 국장, 과장 3. 직속기관과 지역교육청 소속기관의 장 및 보조기관 <p>제5조(부교육감) ①충청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교육감 밑에 부교육감을 둔다.</p> <p>②부교육감은 교육감을 보좌하며, 교육감이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권한을 대행하거나 직무를 대리한다.</p> <p>제5조의2 (현행과 같음)</p> <p>[별표 2] 도서관의 명칭과 위치</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 style="width: 33%;">관할교육청</td> <td style="width: 33%;">도서관명</td> <td style="width: 33%;">위 치</td> </tr> <tr> <td>충청북도과산 중평교육청</td> <td>괴산도서관</td> <td><생략></td> </tr> <tr> <td>충청북도과산 중평교육청</td> <td>증평도서관</td> <td><생략></td> </tr> </table> <p>[별표 4] 학생아영장의 명칭과 위치</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 style="width: 33%;">관할교육청</td> <td style="width: 33%;">아영장명</td> <td style="width: 33%;">위 치</td> </tr> <tr> <td>충청북도과산 중평교육청</td> <td>청천학생 아영장</td> <td><생략></td> </tr> </table> <p style="text-align: center;">부 칙</p> <p>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6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p>	관할교육청	도서관명	위 치	충청북도과산 중평교육청	괴산도서관	<생략>	충청북도과산 중평교육청	증평도서관	<생략>	관할교육청	아영장명	위 치	충청북도과산 중평교육청	청천학생 아영장	<생략>	<p>제2조(보조·보좌기관등 직급) (개정안과 같음)</p> <p>제5조(부교육감)(개정안과 같음)</p> <p>제5조의2(개정안과 같음)</p> <p>[별표 2] 도서관의 명칭과 위치 (개정안과 같음)</p> <p>[별표 4] 학생아영장의 명칭과 위치 (개정안과 같음)</p> <p style="text-align: center;">부 칙</p> <p>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0조제3항의 별표2 및 제32조제3항의 별표4의 개정규정은 2006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p>
관할교육청	도서관명	위 치																														
충청북도과산 교육청	괴산도서관	<생략>																														
충청북도과산 교육청	증평도서관	<생략>																														
관할교육청	아영장명	위 치																														
충청북도과산 교육청	청천학생 아영장	<생략>																														
관할교육청	도서관명	위 치																														
충청북도과산 중평교육청	괴산도서관	<생략>																														
충청북도과산 중평교육청	증평도서관	<생략>																														
관할교육청	아영장명	위 치																														
충청북도과산 중평교육청	청천학생 아영장	<생략>																														

충청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보조·보좌기관등 직급) 다음 각호의 직급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1. 본청의 부교육감, 국장, 담당관, 과장
2. 지역교육청의 국장, 과장
3. 직속기관과 지역교육청 소속기관의 장 및 보조기관

제5조를 제5조의2로 하고, 제5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부교육감) ①충청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교육감 밑에 부교육감을 둔다.

②부교육감은 교육감을 보좌하며, 교육감이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권한을 대행하거나 직무를 대리한다.

별표2 및 별표4의 관할교육청란중 “충청북도괴산교육청”을 “충청북도 괴산증평교육청”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6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국장·담당관·과장 등 보조·보좌기관의 직급 등) 본청과 지역교육청에 두는 국장·담당관 및 과장의 직급과, 직속기관과 지역교육청 소속기관의 장 및 보조기관의 직급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p> <p><신 설></p> <p>제5조 (국의설치) 충청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교육국 및 기획관리국을 둔다.</p> <p>[별표 2] 도서관의 명칭과 위치</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ext-align: center;"> <thead> <tr> <th>관 할 교 육 청</th> <th>도서관명</th> <th>위 치</th> </tr> </thead> <tbody> <tr> <td>충청북도괴산교육청</td> <td>괴산도서관</td> <td><생략></td> </tr> <tr> <td>충청북도괴산교육청</td> <td>증평도서관</td> <td><생략></td> </tr> </tbody> </table> <p>[별표 4] 학생야영장의 명칭과 위치</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ext-align: center;"> <thead> <tr> <th>관 할 교 육 청</th> <th>야영장명</th> <th>위 치</th> </tr> </thead> <tbody> <tr> <td>충청북도괴산교육청</td> <td>청천 학생야영장</td> <td><생략></td> </tr> </tbody> </table>	관 할 교 육 청	도서관명	위 치	충청북도괴산교육청	괴산도서관	<생략>	충청북도괴산교육청	증평도서관	<생략>	관 할 교 육 청	야영장명	위 치	충청북도괴산교육청	청천 학생야영장	<생략>	<p>제2조(보조·보좌기관등 직급) 다음 각호의 직급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본청의 부교육감, 국장, 담당관, 과장 2. 지역교육청의 국장, 과장 3. 직속기관과 지역교육청 소속기관의 장 및 보조기관 <p>제5조(부교육감) ①충청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교육감 밑에 부교육감을 둔다.</p> <p>②부교육감은 교육감을 보좌하며, 교육감이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권한을 대행하거나 직무를 대리한다.</p> <p>제5조의2 (현행과 같음)</p> <p>[별표 2] 도서관의 명칭과 위치</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ext-align: center;"> <thead> <tr> <th>관 할 교 육 청</th> <th>도서관명</th> <th>위 치</th> </tr> </thead> <tbody> <tr> <td>충청북도괴산중평교육청</td> <td>괴산도서관</td> <td><생략></td> </tr> <tr> <td>충청북도괴산중평교육청</td> <td>증평도서관</td> <td><생략></td> </tr> </tbody> </table> <p>[별표 4] 학생야영장의 명칭과 위치</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ext-align: center;"> <thead> <tr> <th>관 할 교 육 청</th> <th>야영장명</th> <th>위 치</th> </tr> </thead> <tbody> <tr> <td>충청북도괴산중평교육청</td> <td>청천 학생야영장</td> <td><생략></td> </tr> </tbody> </table>	관 할 교 육 청	도서관명	위 치	충청북도괴산중평교육청	괴산도서관	<생략>	충청북도괴산중평교육청	증평도서관	<생략>	관 할 교 육 청	야영장명	위 치	충청북도괴산중평교육청	청천 학생야영장	<생략>
관 할 교 육 청	도서관명	위 치																													
충청북도괴산교육청	괴산도서관	<생략>																													
충청북도괴산교육청	증평도서관	<생략>																													
관 할 교 육 청	야영장명	위 치																													
충청북도괴산교육청	청천 학생야영장	<생략>																													
관 할 교 육 청	도서관명	위 치																													
충청북도괴산중평교육청	괴산도서관	<생략>																													
충청북도괴산중평교육청	증평도서관	<생략>																													
관 할 교 육 청	야영장명	위 치																													
충청북도괴산중평교육청	청천 학생야영장	<생략>																													

관계법령 발췌서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개정 2005.1.25 법률 제7340호)

제33조 (보조기관) ①교육감 밑에 국가공무원으로 보하는 부교육감 1인(인구 800만명 이상이고 학생 170만명 이상인 시·도는 2인)을 두되, 그 직급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5.1.25>

②부교육감은 당해 시·도교육감이 추천한 자를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개정 2001.1.29>

③부교육감은 교육감을 보좌하여 사무를 처리한다. <개정 2004.1.20>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교육감 2인을 두는 경우에 그 사무분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그중 1인으로 하여금 특정지역의 사무를 담당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05.1.25>

⑤교육감 밑에 필요한 보조기관을 두되, 그 설치·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이 정한 범위안에서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⑥교육감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보조기관의 설치·운영에 있어서 합리화를 도모하고 다른 시·도와의 균형을 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5.1.25>

제33조의2 (교육감의 권한대행·직무대리) ①교육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부교육감이 그 권한을 대행한다.

1. 궐위된 경우
2. 공소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
3.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
4.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에 60일 이상 계속하여 입원한 경우

②교육감이 그 직을 가지고 교육감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에는 후보자 등록을 한 날부터 선거일(제1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선투표를 하는 경우에는 결선투표일을 말한다)까지 부교육감이 교육감의 권한을 대행한다.

③교육감이 출장·휴가 등 일시적인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교육감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경우에 부교육감이 2인인 시·도에 있어서는 대통

령령이 정하는 순에 의하여 그 권한을 대행하거나 그 직무를 대리한다.
<신설 2005.1.25>

⑤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권한을 대행하거나 직무를 대리할 부교육감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권한의 대행 또는 직무를 대리할 수 없을 때에는 당해 시·도의 교육규칙에 규정된 직제순에 의한 공무원이 그 권한을 대행하거나 그 직무를 대리한다. <개정 2005.1.25>[본조신설 2004.1.20]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 2006.1.12 대통령령 제19246호)

제21조 (교육청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 법 제36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청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 2와 같다.

부 칙

이 영은 200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2] 교육청의 명칭, 위치 관할구역

시·도	명 칭	위 치	관 할 구 역
충청북도	충청북도괴산중평교육청	괴산군	괴산군, 중평군